

『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할 경우,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2011. 7. 14. 공포, 2011. 10. 15. 시행)됨에 따라,
-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(안 제3조)

-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
- 제외대상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,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비용추계의 방법(안 제4조)

- 재정수반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
-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
-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표시
-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제한 나머지 비용 추계

○ 비용추계의 기간(안 제5조)

-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(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)

○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
- 비용 수반 의안 입안 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
- 조례안은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
- 주민청구조례안도 시의회 부의 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걸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난 2011년 7월 15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신설된 제66조의3 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” 조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안건 제출시 비용추계서의 첨부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 66조의 3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,
- 비용추계서의 제외대상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외하였음.
-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으며, 재원 조달 방안 작성과 비용추계서의 검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의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사항을 입법화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작성내용 및 방법, 재원조달 방안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